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5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영주시의 발전가능한 사업과 맑고 깨끗한 영주건설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유엔(UN)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 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유엔(UN)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 제21을 시민·사업자와 합의 도출 및 추진하기 위하여 의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)
- 나. 의제추진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(안 제17조제3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(UN)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 제21을 시민·사업자와 합의 도출 및 추진하기 위하여 의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의제추진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【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시민참여) ①(생략)</p> <p><u>②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7조(시민참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(UN)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 제21을 시민·사업자와 합의 도출 및 추진하기 위하여 의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의제추진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